

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도로,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 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,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·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,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·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(안 제2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예규안

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도로,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 
시·도지사가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